

[사 건 명] 행심 2018 - 78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서면사과』 처분 취소 청구

□ 청구인 : ◇◇◇

□ 피청구인 : ◎◎학교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 11. 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서면사과』 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이유]

I. 사건개요

가. 청구인 ◇◇◇는 ◎◎학교 학생으로, 2018. 10월경 발생한 피해학생 ☆☆☆에 대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2018. 11. 14.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라 함)가 개최되어, 피청구인은 2018. 11. 26. 청구인에게 『서면사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 조치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통보받고, 2018. 12. 18.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한다.

- 가. 학교폭력전담기구 및 학폭위는 사건 전·후 사정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시행하지 않고 피해학생 측의 주장에만 초점을 맞추어 사건을 처리하였으므로 위법·부당하다.
- 나. 청구인은 피해학생을 따돌림하지 않았고, 피해학생측은 학폭위에서 근거 없는 허위 사실들을 주장하였으므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 다.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들의 중립성 없는 언행과 편파적인 진행과정으로 청구인이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라. 피해학생이 2018. 10월 초 청구인의 뺨을 때렸고, 2018. 10. 16.에는 청구인의 이마를 핫팩으로 때린 적도 있다.
- 마. 청구인은 피해학생에게 뒷담화를 하지 말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뒷담화를 하기에 한차례 뒷담화를 하였을 뿐인데,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학폭위가 소집되었다.
- 바. 피해학생이 음악선생님에게 잘 보여 ■■■ 무대에 오른다는 내용은 이미 학급 내에 소문이 났고 청구인도 소문으로 들었던 내용인데, 학폭위에서 허위사실을 사안으로 올려 청구인을 주동자로 몰아갔다.

사. 청구인이 피해학생의 가해행위를 담임교사에게 얘기했지만 입막음시켰고, 피해학생은 학폭위 이후에도 청구인을 쫓아보고 뒷담화를 하는 등 가해행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Ⅲ.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학폭위에서는 청구인 및 피해학생 모두 뒷담화를 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은근히 따돌림을 시켰다는 부분도 정확하지 않아 참고만 하였으며, 동영상 댓글도 청구인이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청구인이 피해학생의 ■■■■ 공연에 대해 오해하고 피해학생의 기록 노트를 허락 없이 가져간 것에 대해서 ‘서면사과’ 처분 조치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하고 바람직한 조치를 하려고 최선을 다하였고, 청구인이 피해학생일 때와 ☆☆☆이 피해학생일 때의 서로의 주장이 다르고 상반된 것이 있지만, 두 학생을 보호하고 바람직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교육적 차원에서 생각하고 판단하여 내린 조치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Ⅳ.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처분근거 법령

-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
-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2. 인정되는 기초 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증거자료,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구술심리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가. 학교축제(이하 ‘■■■■’라 한다.) 공연 오디션에서 청구인과 ☆☆☆(피해학생)이 모두 탈락을 했으나 음악선생님이 두 학생이 같은 팀으로 나오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함. 이에 청구인과 피해학생이 ■■■■ 공연을 준비하던 중 감정이 상하여 청구인이 공연을 포기하였고, 피해학생은 입상 경력이 있어 ■■■■ 공연무대에 나가게 되었음.
- 나. 청구인은 피해학생이 음악선생님에게 잘 보여서 ■■■■ 공연 무대에 올랐다고 오해하였고, 공연 당시 다른 친구들과 함께 피해학생이 아닌 △△△ 학생을 응원하자고 함. 청구인이 피해학생의 공연 모습(머리를 깎 모습)을 보고 웃기도 하여 이에 대해서는 담임선생님이 동석한 자리에서 피해학생에게 사과하였음.
- 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청구인과 피해학생의 상호 뒷담화가 있는 등 사

이가 점점 더 멀어졌고, 2018. 10. 26. 청구인은 피해학생의 책상서랍에 있는 기록노트를 허락 없이 몰래 가져감.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학교폭력 해당 여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약취,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위 개념에서 제시하는 유형은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청구인이 2018. 10. 26. 피해학생의 기록노트를 피해학생의 허락 없이 몰래 가져간 것은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피해학생의 기록노트를 허락 없이 가져간 것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다만 그 배경에 관해 피해학생이 담임교사의 지시로 청구인에 대해 기록한 사실이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타인의 물건을 허락 없이 함부로 가져간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나.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동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가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또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19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폭위에서는 심각성 없음(0점), 지속성 낮음(1점), 고의성 없음(0점), 반성정도 매우 높음(0점), 화해정도 매우 높음(0점)으로 평가하였고, 총점 1점에 해당하는 서면사과 조치하였다.

청구인 측의 진술 내용 및 태도, 청구인 측에서 피해학생을 경찰에 신고하여 사법절차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하면, 반성 정도나 화해 여부에 의문이 있는데, 오히려 학폭위에서는 반성 정도를 매우 높음, 화해정도를 매우 높음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였다. 지속성과 관련해서, ■■■■ 공연 준비 과정 및 공연 이후 청구인과 피해학생 간의 갈등이 지속되어 온 점에 비추어 지속성을 인정하고 그 정도는 낮음으로 판단하였는데,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없다.

다. 결론

청구인의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하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

V. 결 론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